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엄셋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간접흡연”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 (안 제2조제2호)
  -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택시승차대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상지 추가 (안 제5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재정비(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승차대와 지하철역 출입구 등을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를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설하였습니다.

-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지정 현황 -

구 분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지자체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강남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금천구	10개 기지정	192개소 미지정	3개소 중 1개소 지정 (금연거리에 포함)

※ 관내 조례에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역구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市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금역구역 기지정(지정일 : 2016. 5. 1)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